제2688호
2019. 10. 23.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 집 인 :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9-125호 : 도시관리계획(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2
제2019-126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5
제2019-127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6
제2019-128호 :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 고시 ····· 7

◉ 공 고

제2019-772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8
제2019-776호 :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 13
제2019-781호 :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 30
제2019-783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3
제2019-784호 : 보상계획 열람공고 ····· 35
제2019-792호 :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 · 공고 ····· 37
제2019-801호 : 전통시장 인정 공고 ····· 4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서울특별시중구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25호

도시관리계획(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263호(2005. 9. 1)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38호(2012. 9. 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12호(2014.09.04)로 변경결정 고시된 우리구 북창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9년 제4차 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9. 9. 23)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결정 취지

- 「북창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시설(소로(특) 3-187) 공공조성을 위해 일부구간(북창동88-1, 94-47) 공동개발특별지정 해제 및 시행지침을 변경하고자 함

2. 북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1)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공동개발 면적(㎡)	위치		필지면적 (㎡)	비고	획지 (공동개발)계획	기공동 건축	동일 소유
기정	16	166.7	북창동	88-1	63.7	시설편입	공동개발 특별지정		O
			북창동	88-2	69.6	과소필지			
			북창동	94-41	33.4	과소필지			
		239.5	북창동	94-38	116.8	주변 과소필지	공동개발 특별지정	-	-
			북창동	94-48	45.0	과소필지		O	O
			북창동	94-47	77.7	시설편입			
변경	16	103.0	북창동	88-2	69.6	과소필지	공동개발지정		O
			북창동	94-41	33.4	과소필지			
		161.8	북창동	94-38	116.8	주변 과소필지	공동개발지정		
			북창동	94-48	45.0	과소필지			

나.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 전 공동개발	변경 후 공동개발	변경사유
16	• 공동개발 특별지정 지정 - 북창동 88-1⊕88-2⊕94.41	• 공동개발 지정 - 북창동 88-2⊕94-41	• 가구번호 16 북창동 88-1번지 63.7㎡, 북창동 94-47번지 77.7㎡는 소로 특3-187에 따라 도로로 조성되며, • 건축 시 도로 조성토록 특별지정된 것을 해제하고 과소필지 등의 사유로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 공동개발 지정함
	• 공동개발 특별지정 지정 - 북창동 94-38⊕94-48⊕94-47	• 공동개발 지정 - 북창동 94-38⊕94-48	

2)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가. 공공부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절 도로시설

제5조의 2 소로(특) 3-187 조성 및 집행계획(변경)

구 분	시 행 지 침
기정	① 서울시 중구 고시 제2013-93(2013.10.3.)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와 동일하게 A구간은 공공이 조성 및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한다.
변경	① 소로 특3-187호선 B-1구간은 공공이 조성 및 집행 하는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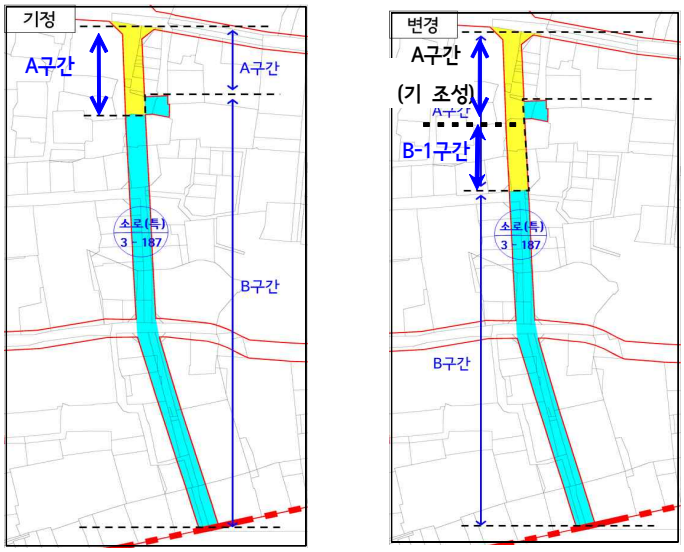

구 분	집행계획
A구간, B-1구간(공공부문)	• 공공재원을 통해 시설 조성
B구간(민간부문)	• 공동개발(특별지정)을 통해 시설 조성

■ 가구 및 획지 관한 결정(변경)도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26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 로 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부여기준
황학동 1448외 2필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5길 13	2019. 10. 23.	난계로15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난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27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5길 13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448	2018.12. 7.	건물 말소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5길 15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450	2017.11. 8	건물 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128호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 고
계	509,445,731	509,445,731	0	0%	
일 반 회 계	444,562,766	444,562,766	0	0%	
특 별 회 계	64,882,965	64,882,965	0	0%	
의 료 급 여 기 금	319,426	319,426	0	0%	
주민소득지원 및 생 활 안 정 자 금	2,010,035	2,010,035	0	0%	
주 차 장	61,428,528	61,428,528	0	0%	
기 반 시 설	1,124,976	1,124,976	0	0%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772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중구 지역 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과정 지원 및 교육혁신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안 제3조 ~ 제4조)
○ 교육혁신센터의 기능(안 제5조)
○ 이용대상, 이용료 등, 이용료 등의 반환(안 제6조 ~ 제8조)
○ 중구교육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등에 관한 사항 등(안 제11조~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교육아동청소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문의전화 : 3396-4666, FAX: 3396-8743, 메일 : gosomi1223@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을 위한 교육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중구교육협의체란 지역내 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동아리, 관련 전문가 등 교육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중구 교육발전을 위해 모인 자발적 합의조직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혁신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명칭은 중구 교육혁신센터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을 1명 두며, 센터장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센터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⑤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사업의 발굴 및 육성
2. 인적·물적 교육 인프라 발굴 및 교육 네트워크 구축
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등)
4. 진로 및 진학을 위한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다양한 교육컨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원
6. 지역교육인프라 역량교육을 통한 지역 교육력 강화
7.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8. 학부모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연계시스템 구축 및 협동조합 연계·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9.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대상) ① 센터의 이용대상은 관내 학생 및 학부모 등 구민으로 한다.
② 단,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이용료 등은 공공성과 수입자 부담원칙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 등을 반환한다.
1. 센터의 이용을 신청한 사람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반환기준에 준하는 이용료 등 반환
2.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나 정전 등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이용료 등 전액 반환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등 전액 반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등 전액 반환

제9조(중구교육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중구의 교육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및 교육현안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중구교육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중구교육협의체의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교육지원 및 협력에 관한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중구교육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교육혁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혁신센터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 또는 위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학교교육 전문가(학교장, 교사 등)
4. 초·중·고등학교 교급별 학부모 대표
5. 중구교육협의체 대표
6. 청소년 대표
7. 입시전문가
8. 그 밖에 교육전문가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3조 제③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결의 공정 성을 해친 때
2.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연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혁신센터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 등 (제7조 관련)

구 분	대 상	상한금액
이용료 등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	50,000원

[별표 2]

이용료 등의 감면 기준 (제8조 관련)

구 분	대 상	비 고
면 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 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해당 여부 증빙 필요
50% 감면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 은 장애인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776호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 제1·3·6·18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포함 -

1.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06.29.)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된 우리구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일대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과 관련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환경정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립한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정비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구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일대	85,782.3	-	85,782.3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2) 지구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합 계				85,782.3	64,764.3	16,402.0	-	-
기정	을지로2가	1	삼각동 66-1일대	6,619.6	6,619.6	-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존치지구
기정	을지로2가	3	삼각동 56-1일대	1,124.7	1,124.7	-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미시행
기정	을지로2가	6	삼각동 117	1,798.2	1,388.7	409.5	건설부고시	완료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제123호('77.6.29)	
기정	을지로2가	18	삼각동 36-2일대	714.0	714.0	-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미시행
변경	을지로2가	1·3·6·18	삼각동 66-1일대	12,401.4	10,489.8	1,911.6	-	보전정비형
변경	을지로2가	1-2	삼각동 79-1일대	617.0	617.0	-	-	시행지구
기정	을지로2가	2	삼각동 93일대	3,473.7	3,473.7	-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보존지구
변경	을지로2가	2	남대문로1가 19일대	1,983.4	1,983.4	-	-	보전정비형
기정	을지로2가	5	수하동 67	13,049.0	9,097.3	3,951.7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완료
기정	을지로2가	8	을지로2가 15일대	2,403.1	1,725.6	677.5	서울시고시 제1996-220호 ('77.6.29)	완료
기정	을지로2가	9	삼각동 115일대	1,477.4	1,477.4	-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존치지구
변경	을지로2가	18-1	남대문로1가 20일대	105.0	105.0	-	-	소단위 관리지구
변경	을지로2가	18-2	남대문로1가 21일대	82.3	82.3	-	-	소단위 관리지구
변경	을지로2가	18-3	남대문로1가 22-1일대	114.6	114.6	-	-	소단위 관리지구
변경	을지로2가	18-4	남대문로1가 22-8일대	62.0	62.0	-	-	소단위 관리지구
변경	을지로2가	18-5	남대문로1가 22-10	154.7	154.7	-	-	소단위 관리지구
변경	을지로2가	19-1	삼각동 113	212.5	212.5	-	-	소단위 관리지구
변경	을지로2가	19-2	삼각동 112	92.5	92.5	-	-	소단위 관리지구
변경	을지로2가	19-3	삼각동 115	573.2	573.2	-	-	소단위 관리지구
변경	을지로2가	19-4	삼각동 111-3	154.5	154.5	-	-	소단위 관리지구
기정	을지로2가	10	을지로2가 6일대	4,854.6	4,006.0	848.6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완료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기정	을지로2가	11	을지로2가 9-10일대	1,875.6	1,875.6	-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존치지구
변경	을지로2가	11	을지로2가 9-10일대	1,875.6	1,875.6	-	-	시행지구
기정	을지로2가	12	수하동 66	5,089.8	3,749.4	1,340.4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완료
기정	을지로2가	15	을지로2가 11	7,678.1	5,914.4	1,763.7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완료
기정	을지로2가	16	장교동 1	19,438.0	15,333.5	4,104.5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완료
기정	을지로2가	17	삼각동 36-2	8,543.2	6,739.2	1,804.0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완료
신설	을지로2가	20-1	삼각동 93일대	164.5	164.5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을지로2가	20-2	삼각동 107	103.2	103.2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을지로2가	20-3	삼각동 106일대	206.0	206.0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을지로2가	20-4	삼각동 105	351.4	351.4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을지로2가	20-1	삼각동 93일대	253.5	253.5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을지로2가	21-2	수하동 50-9일대	603.2	603.2	-	-	소단위 관리지구
계획기반시설 중 기존 국공유지				4,616.0	-	-	-	-

※ 1·3·6·18지구의 사업시행지구 면적은 정비기반시설 면적에서 현금부담(토지환산면적 491.3㎡)을 제외한 사항임
- 납부금액 : 추가 부담면적의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부담하고, 향후 대상지 편입필지의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확정

3) 지구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지구명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	1지구 3지구 6지구 18지구	1·3·6·18지구 1-2지구	삼각동 66-1일대	· 지구계(통합) 및 정비유형의 변경 - 존치지구→보존지구(보전정비형) 및 시행지구로 전환	· 1·3·6·18지구 정비계획안의 반영 및 토지 소유관계등을 고려하여 지구계 조정	-
변경	2지구	2지구	남대문로1가 19일대	· 지구계 변경 - 면적 : 3,473.7㎡→1,983.4㎡	· 1·3·6·18지구 정비계획안의 반영 및 토지 소유관계등을 고려하여 지구계 조정	-

구분	지구명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	9지구	18-1~18-5, 19-1~19-4 지구	남대문로1가 20일대	· 존치지구 → 소단위관리지구 전환	· 획지형상 및 도로 등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존치지구를 소단위관리지구로 전환	-
변경	11지구	11지구	남대문로5가 544일대	· 정비유형의 변경 - 존치지구 ⇒ 일반정비지구	· 2025기본계획상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존치지구를 시행지구로 전환	-
신설	-	20-1~20-4, 21-1~21-2 지구	수하동 65-1일대	· 소단위관리지구 신설	· 획지형상 및 도로 등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기반시설부지를 소단위관리지구로 전환	-

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85,782.3	-	85,782.3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2,543.2	감) 1,525.2	21,018.0	24.6	-
	도 로		15,530.1	증) 158.9	15,689.0	18.4	-
	공 원		3,065.2	감) 959.5	2,105.7	2.5	-
	공공공지		3,087.4	감) 2,284.0	803.4	0.9	-
	녹 지		860.5	감) 388.4	472.1	0.5	-
	광 장		-	증) 1,210.8	1,210.8	1.4	-
	공공청사		-	증) 737.0	737.0	0.9	-
획지	소 계		63,239.1	증) 1,525.2	64,764.3	75.4	-
	일반 정비형	3지구	1,124.7	감) 1,124.7	-	-	-
		5지구	9,097.3	-	9,097.3	-	-
		6지구	1,388.7	감) 1,388.7	-	-	-
		8지구	1,725.6	-	1,725.6	-	-
		10지구	4,006.0	-	4,006.0	-	-
		11지구	-	증) 1,875.6	1,875.6	-	-
		12지구	3,749.4	-	3,749.4	-	-
		15지구	5,914.4	-	5,914.4	-	-
		16지구	15,333.5	-	15,333.5	-	-
		17지구	6,739.2	-	6,739.2	-	-
		18지구	714.0	감) 714.0	-	-	-
		1-2지구	-	증) 617.0	617.0	-	-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소단위 관리지구	9	-	증) 1,551.3	18-1지구	105.0	-	-
					18-2지구	82.3	-	-
					18-3지구	114.6	-	-
					18-4지구	62.0	-	-
					18-5지구	154.7	-	-
					19-1지구	212.5	-	-
					19-2지구	92.5	-	-
					19-3지구	573.2	-	-
					19-4지구	154.5	-	-
		2	-	증) 825.1	20-1지구	164.5	-	-
					20-2지구	103.2	-	-
					20-3지구	206.0	-	-
					20-4지구	351.4	-	-
획지	소단위 관리지구	-	-	증) 856.7	21-1지구	253.5	-	-
					21-2지구	603.2	-	-
	존치지구	1지구	6,619.6	감) 6,619.6	-		-	-
		11지구	1,875.6	감) 1,875.6	-		-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2지구	3,473.7	감) 1,490.3	1,983.4		-	-
		9지구	1,477.4	감) 1,477.4	-		-	-
		1·3·6·18지구	-	증) 10,489.8	10,489.8		-	-

※ 1·3·6·18지구의 사업시행지구 면적은 정비기반시설 면적에서 현금부담(토지환산면적 491.3㎡)을 제외한 사항임
- 납부금액 : 추가 부담면적의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부담하고, 향후 대상지 편입필지의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확정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5,782.3	-	85,782.3	100.0	-
일반상업지역	85,782.3	-	85,782.3	100.0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방화지구	종로구 종로2가 및 3가, 관철동, 관수동, 중구 남대문로1가,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입정동, 을지로2가 및 3가 각 일부지역	320,000.0	-	-

(2) 개발진흥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특정개발 진흥지구	중구 삼각동 50-1 일대	281,330.7	-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폭원 (m)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중로	2	196	1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92	수하동 1-1	을지로2가 41-3	-	서울시고시 제729호 (1984.12.7)	-
기정	중로	2	224	15	집산 도로	일반 (지하) 도로	237	삼각동 51	을지로2가 18-2	-	서울시고시 제1996-220호 (1996.8.9)	-
기정	중로	3	1	12 ~13.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5,390	세종로 광장	고산자로	청계천	서울시고시 제130호 (2003.5.28)	-
기정	중로	3	43	12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28	장교동 72-2	을지로2가 74	-	서울시고시 제729호 (1984.12.7)	-
기정	소로	2	1	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25	남대문로1가 25-1	을지로2가 10	-	서울시고시 제729호 (1984.12.7)	-
기정	소로	2	3	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00	을지로2가 13-2	을지로2가 32-2	-	서울시고시 제729호 (1984.12.7)	-
신설	중로	3	44	14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65	남대문로1가 22-4	삼각동 27-2	-	-	-
신설	소로	2	4	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40	삼각동 111-2	삼각동 111-3	-	-	-
신설	소로	2	5	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2	삼각동 34-3	삼각동 117-2	-	-	-
신설	소로	3	1	4	집산 도로	일반 도로	93	남대문로1가 48-7	삼각동 34-3	-	-	-
신설	소로	3	2	4	집산 도로	일반 도로	55	삼각동 113	남대문로1가 22-12	-	-	-
폐지	중로	2	195	1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31	남대문로1가 20	수하동 39-2	-	서울시고시 제1996-220호 (1996.8.9)	-
폐지	중로	3	223	12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05	삼각동 50-1	수하동 36-1	-	서울시고시 제729호 (1984.12.7)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3-44	· 중로 신설 - 폭원 : 14m - 연장 : 165m	· 기존 획지형상 및 도로 등 현황여건을 감안한 소단위관리지구의 전환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2-4	· 중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40m	
-	소로 2-5	· 중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22m	
-	소로 3-1	· 중로 신설 - 폭원 : 4m - 연장 : 93m	
-	소로 3-2	· 중로 신설 - 폭원 : 4m - 연장 : 55m	
중로 2-195	-	· 중로 폐지 - 폭원 : 15m - 연장 : 131m	· 소단위관리지구 전환에 따른 폐지
중로 3-223	-	· 도로 폐지 - 폭원 : 12m - 연장 : 105m	· 1·3·6·18지구 통합에 따른 폐지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3,065.2	감) 959.5	2,105.7	-	-
기정	③	공원	역사공원	삼각동 7-1일대	2,105.7	-	2,105.7	서울시고시 제2006-211호 (2006.6.15.)	-
폐지	①	공원	소공원1	수하동 63일대	684.5	감) 684.5	-	서울시고시 제2006-211호 (2006.6.15.)	-
폐지	②	공원	소공원2	삼각동 111-4일대	275.0	감) 275.0	-	서울시고시 제2006-211호 (2006.6.15.)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 소공원 폐지	·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공원 폐지 후 공공공지 및 소단위관리지구로 전환
②	공원	· 소공원 폐지	·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공원 폐지 후 공공청사로 전환

(2)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3,087.4	감) 2,284.0	803.4	-	-
신설	①	공공공지	남대문로1가 22-12일대	-	증) 203.8	203.8	-	-
신설	②	공공공지	삼각동 111-1일대	-	증) 171.3	171.3	-	-
신설	③	공공공지	수하동 68-1일대	-	증) 428.3	428.3	-	-
폐지	①	공공공지	삼각동 110-3일대	1,223.4	감) 1,223.4	-	-	-
폐지	②	공공공지	삼각동 6일대	653.2	감) 653.2	-	-	-
폐지	③	공공공지	삼각동 6일대	1,210.8	감) 1,210.8	-	-	-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기결정 도로 부지를 공공공지로 전환
②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기결정 도로 부지를 공공공지로 전환
③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기결정 도로 부지를 공공공지로 전환
①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기결정 공공공지를 도로로 전환
②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기결정 공공공지를 도로로 전환
③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기결정 공공공지를 도로로 전환

(3)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860.5	-	472.1	-	-
기정	②	녹지	연결녹지	을지로2가 12-4일대	472.1	-	472.1	-	-
폐지	①	녹지	연결녹지	삼각동 35일대	388.4	감) 388.4	-	-	-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연결녹지	· 연결녹지 폐지	· 1·3·6·18지구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폐지

(4)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①	광장	삼각동 6일대	-	증) 1,210.8	1,210.8	-	-

- 광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광장	· 광장 신설	·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공공공지를 광장으로 전환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①	공공청사	삼각동 111-5일대	-	증) 737.0	737.0	-	-

(2) 공공청사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 고
60이하	600이하	90이하	-

※ 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

(3) 공공청사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 위치 : 삼각동 111-5일대 · 면적 : 737.0㎡	· 도로 및 소공원② 일부를 복합 공공청사 부지로 전환 복합공공청사 도입을 위해 신설 · 1·3·6·18지구에서 정비사업 시행시 부담

4) 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대 상	계획내용
일반정비지구	· 1-2, 5, 8, 10, 11, 12, 15, 16, 17지구	기결정 획지계획 유지
소단위정비지구	-	660~1,000㎡이하
소단위관리지구	· 18-1~18-5, 19-1~19-4 20-1~20-4, 21-1~21-2지구	660㎡이하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 1·3·6·18, 2지구	기결정 획지계획 유지

※ 소단위관리지구 및 소단위정비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소단위정비지구 또는 일반정비지구로 전환가능

5)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가) 일반정비지구

구 분	지 구	주용도	비 고
①	· 5, 8, 10, 12, 15, 16, 17지구	업무	완료지구
②	· 1-2, 11지구	업무	시행지구

※ 기본계획상 도심핵지역 주용도 : 업무, 숙박, 문화/집회, 주거(상징가로변 주거용도 불가)

나) 소단위정비·소단위관리지구

(1) 불허용도계획

· 관련법상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용도 반영

(2) 권장용도계획

· 일반상업지역내 도입가능한 용도 중 주용도 선택적 적용가능

· 저층부는 가로활성화 용도로 지정하고, 전층 권장용도 계획을 통해 계획적 개발 유도

구분	지 구	주용도	지정용도(저층)	권장용도(전층)	비고
①	소단위정비지구	일반상업지역내 건축가능한 용도	가로활성화용도 (1종·2종근린생활시설)	· 1종·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등)	-
②	소단위관리지구				

※ 가로활성화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단, 종교집회장 및 고시원 제외)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전시장 등
- 「건축법 시행령」별표1 노유자시설 : 도심내 업무종사자를 위한 아동관련 시설 등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숙박시설 : 도심관광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소규모호텔 등

다) 보존지구(보전정비형)

구 분	지 구	주 용 도	비 고
①	· 2지구	업무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②	· 1·3·6·18지구	업무	

6)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1) 건폐율에 관한 계획

구 분	지 구 명	위 치	건폐율	비 고
일반정비지구	5, 8, 10, 12, 15, 16, 17지구	-	60%이하 (심의통해 완화가능)	완료지구
	1-2, 11지구	-		시행지구
소단위정비지구	-	-	5층이하 : 80% 5층초과 : 60%	-
소단위관리지구	18-1~18-5, 19-1~19-4, 20-1~20-4, 21-1~21-2지구	-	80%이하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1·3·6·18, 2지구	-	60%이하 (심의통해 완화가능)	-

※ 1·3·6·18지구는 광통관 앙각규제 및 근현대 건축자산 지정에 따라 개발에 제한으로 전폐율 70%로 적용(심의통해 완화)

(2) 용적률에 관한 계획

구 분	지 구 명	위 치	용적률(%)			비 고
			기준	허용	상한	
일반정비지구	5, 8, 10, 12, 15, 16, 17지구	-	600	800	α	완료지구
	1-2, 11지구	-				시행지구
소단위정비지구	-	-	600	800	α	-
소단위관리지구	18-1~18-5, 19-1~19-4, 20-1~20-4, 21-1~21-2지구	-	600	-	α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1·3·6·18, 2지구	-	600	800	α	-

다) 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높 이	비 고
일반정비지구	5, 8, 10, 12, 15, 16, 17지구	-	90m이하	완료지구
	1-2, 11지구	-		시행지구
소단위정비지구	-	-	50m이하	-
소단위관리지구	18-1~18-5, 19-1~19-4, 20-1~20-4, 21-1~21-2지구	-	30m이하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1·3·6·18, 2지구	-	90m이하	-

※ 단, 소단위정비지구는 간선변(20m이상)등 접도 및 구역별 여건에 따라 심의를 통해 70m이하까지 가능

7) 건축물의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가) 일반정비지구(완료, 시행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기정	1	6,619.6	삼각동 66-1일대	업무	52.32	262.12	-	존치지구
변경	1-2	617.0	삼각동 79-1일대	-	60이하	600/800/α	90이하	시행지구
기정	5	9,097.3	수하동 67	업무	56.00	1,182.11	148	완료지구
기정	8	1,725.6	을지로2가 15일대	업무	57.55	981.18	95.3	완료지구
기정	10	4,006.0	을지로2가 6외 3	업무	39.57	576.63	62.78	완료지구
기정	11	1,875.6	을지로2가 9	업무	38.90	802.70	59.7	존치지구
변경	11	1,875.6	을지로2가 9	업무	60이하	600/800/α	90m이하	시행지구
기정	12	3,749.4	수하동 66	업무	55.2	1,002.59	127.6	완료지구
기정	15	5,914.4	을지로2가 11	업무	36.89	1,025.23	148.72	완료지구
기정	16	15,335.5	장교동 1	업무	34.93	666.84	148	완료지구
기정	17	6,739.2	을지로2가 50	업무	35.38	624.47	-	완료지구

나) 소단위관리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기정	9	1,477.4	삼각동 115일대	업무	-	-	-	존치지구
변경	18-1	105.1	남대문로1가 20일대	-	80이하	600/-/α	30이하	-
변경	18-2	82.3	남대문로1가 21일대	-	80이하	600/-/α	30이하	-
변경	18-3	114.6	남대문로1가 22-1일대	-	80이하	600/-/α	30이하	-
변경	18-4	62.0	남대문로1가 22-8일대	-	80이하	600/-/α	30이하	-
변경	18-5	154.7	남대문로1가 22-10	-	80이하	600/-/α	30이하	-
변경	19-1	212.5	삼각동 113	-	80이하	600/-/α	30이하	-
변경	19-2	92.5	삼각동 112	-	80이하	600/-/α	30이하	-
변경	19-3	573.2	삼각동 115	-	80이하	600/-/α	30이하	-
변경	19-4	154.5	삼각동 111-3	-	80이하	600/-/α	30이하	-
신설	20-1	164.5	삼각동 93일대	-	80이하	600/-/α	30이하	-
신설	20-2	103.2	삼각동 107	-	80이하	600/-/α	30이하	-
신설	20-3	206.0	삼각동 106일대	-	80이하	600/-/α	30이하	-
신설	20-4	351.4	삼각동 105	-	80이하	600/-/α	30이하	-
신설	21-1	253.5	수하동 65-1	-	80이하	600/-/α	30이하	-
신설	21-2	603.2	수하동 50-9 일대	-	80이하	600/-/α	30이하	-

다) 보존지구(보전정비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기정	1	6,619.6	삼각동 66-1일대	업무	52.32	262.12	-	존치지구
기정	3	1,124.7	삼각동 56-1일대	-	-	-	-	미시행
기정	6	1,388.7	삼각동 117	업무	39.96	923.89	94.6	완료지구
기정	18	714.0	삼각동 36-2일대	-	-	-	-	미시행
변경	1·3·6·18	10,489.8	삼각동 66-1일대	업무	70이하	936.0이하	90이하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기정	2	3,473.7	삼각동 93일대	-	-	-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변경	2	1,983.4	남대문로1가 19일대	업무	80이하	600/800/α	90이하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 1·3·6·18지구 소유자의 정비계획변경제안('18.12.14)에 따른 변경

⇒ 건축시설 계획 :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936.0%이하, 높이 90m이하

⇒ 현금부담(토지환산면적 491.3㎡)은 정비기반시설 면적에서 제외

- 납부금액 : 추가 부담면적의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부담하고, 향후 대상지 편입필지의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확정

■ 제1·3·6·18지구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지상/지하)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을지로2가구역 제1지구	6,619.6	-	6,619.6	삼각동 66 -1일대	업무	52.32	262.12	-	-	-
기정	을지로2가구역 제3지구	1,124.7	-	1,124.7	삼각동 56 -1일대	-	60이하	600/800/ α	90이하	-	-
기정	을지로2가구역 제6지구	1,798.2	-	1,388.7	삼각동 117	업무	39.96	923.89	94.6	-	-
기정	을지로2가구역 제18지구	714.0	-	714.0	삼각동 36 -2일대	-	60이하	600/800/ α	90이하	-	-
변경	을지로2가구역 제1·3·6·18지구	12,401.4	-	10,489.8	삼각동 66 -1일대	업무	70이하	936.0이하	90이하	20/6이하	-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 용적률 : 936.0%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0%

② 허용용적률 : 200.0%

목 적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그린 1등급)		기준등급 준수시 허용용적률 총량의1/2부여	100%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240(kWh/㎡·y이하)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11%이상)			
역사보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시설물 포함) 및 지역 유래 등 스토리텔링을 위한 전시공간유치 등 위원회에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률부여	50%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정량부여	30%
	공공보행통로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시	정률부여	30%

③ 상한용적률 : 136.9%

구 분	내 용
기반시설부담 내용	기반시설(도로, 공공공지), 공공청사부지 기부채납 및 현금납부
인센티브 산식	800(%) × {1+(1.3×α토지)+(0.7×α현금·건축물)} ※ α토지=토지부담면적/(시행면적-토지부담면적) ※ α현금·건축물=현금·건축물부담면적/(시행면적-토지부담면적) ※ 서울시 현금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19.1) 적용
적용내용	800(%) × {1+(1.3×0.1076)+(0.7×0.0447)} = 936.9%
완화량	136.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청계천로변 10m, 중로2-(대상지 동측)변 3m, 대상지 남측변 1~2m, 남대문로변 2m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청계천로변 4층 초과 15m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 지정용도 :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대지내 공지 : 청계천로변, 대상지 남측변 공개공지 및 대지내 조경 배치

8)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 청계천로변 : 천계천변 가로활성화를 위해 건축한계선 10m 계획

· 일반정비, 보존지구 : 간선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건축한계선 3m 계획

· 소단위정비지구

-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건축한계선 1m계획
- 간선기능을 하는 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건축한계선 3m계획

· 소단위관리지구 : 건축한계선이 필요한 일부 지역에만 지정(시구합동회의결과 반영 2지구 남측 건축한계선 1m계획)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한계선	일반정비지구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 청계천로변 : 대지경계선에서 10m지적 · 남대문로, 을지로, 을지로7길, 삼일대로 : 대지경계선에서 3m지정	-
	소단위정비지구	·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변 : 1m지정 · 간선기능을 하는 도로변 : 3m지정	-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공개공지	일반정비지구	· 조성규모 및 설치기준 -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름 · 조성위치 - 보행결절점 및 간선가로변	-
	소단위정비지구		

다) 건축물 형태 및 외관

(1) 규제사항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외부형태	구역전체	· 사선절제형 또는 계단형 건축형태 금지 · 옥탑층 노출금지 ·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 외부노출 금지	-
건축물 방향성	구역전체	·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에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가 접하도록 배치하여 가능한 전면도로와 건축물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배치	-
저층부 외관	구역전체	· 보행친화적인 저층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재료, 색채를 이용한 시각분절(3층이하 저층부 분리) · 저층부 개방형 입면 조성	-
진입구 처리	구역전체	· 건축물 주 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 접근로에는 가로등, 간판, 이동식화분 등 보행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
재료 및 색채	구역전체	· 반사성 재료 사용금지(금속, 타일, 반사유리) · 외벽면 전체 페인트 마감 금지	-

(2) 권장사항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외부형태	구역전체	· 안정감 있는 분위기와 조화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 권장 · 목재나 석재 등 천연 그대로의 재료사용 권장 · 저층부의 경우 재질감이 느껴지는 소재사용 권장	-

9)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 관한 계획

가) 소단위관리지구 전체에 적용

· 소단위관리지구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

· 2025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시행지침의 기준에 따하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 및 조경, 높이제한 등 기준완화 및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30% 증축가능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고
소단위 관리지구	18-1~18-5지구	남대문로1가 20 일대	건축심의를 통해 기준완화
	19-1~19-4지구	삼각동 113 일대	
	20-1~20-4지구	삼각동 93 일대	
	21-1~21-2지구	수하동 65-1 일대	

10) 정비기반시설 부담 및 설치에 관한 계획

· 을지로2가구역 평균 부담률 유지 : 13.75%이상

· 기반시설 계획조정으로 축소된 부담량은 건축 시설물로 기부채납

※ 일반정비·소단위정비·보존지구(보전정비형)는 정비사업시행시 정비기반시설 부담 의무

※ 소단위관리지구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획지별 필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 가능

11) 정비계획변경(안)도

< 정비계획결정도 (기정) >

<

<정비계획결정(안)도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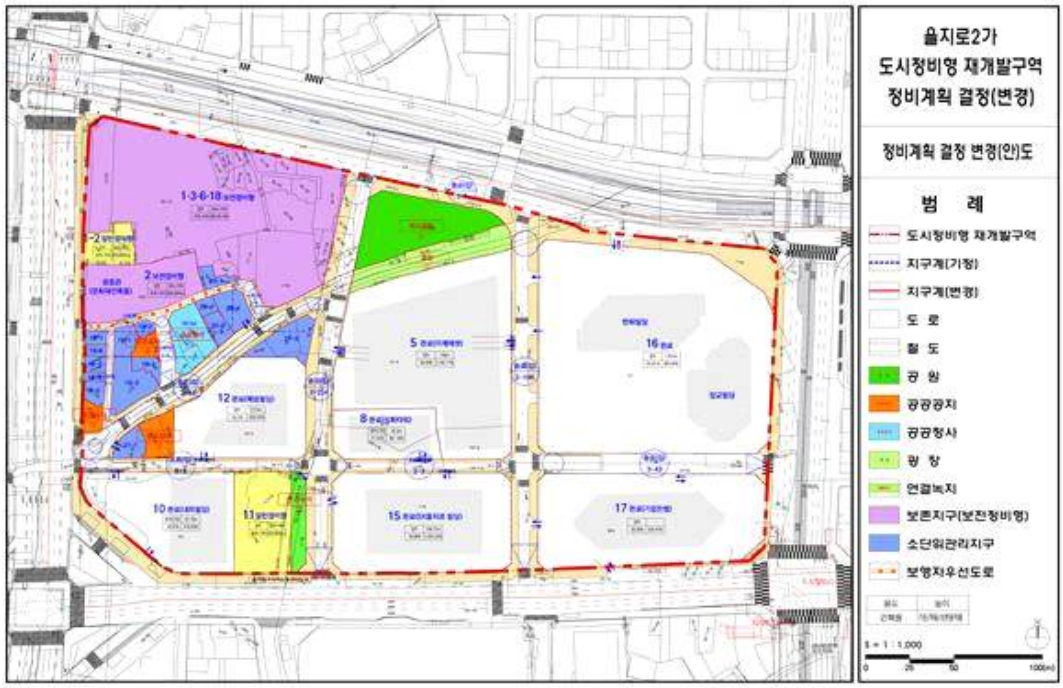

※ 동 정비계획(안)은 미확정된 계획으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제1·3·6·18지구 정비계획변경(안)도

< 정비계획결정도 (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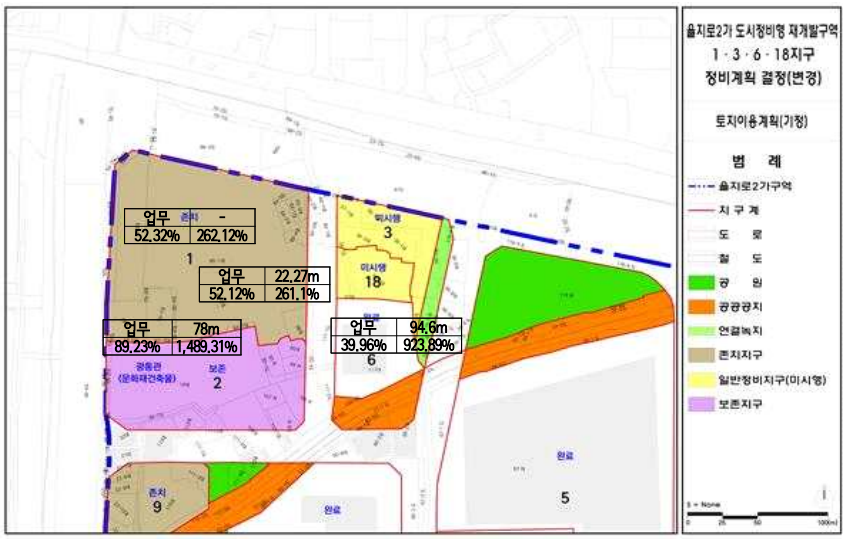

< 정비계획결정(안)도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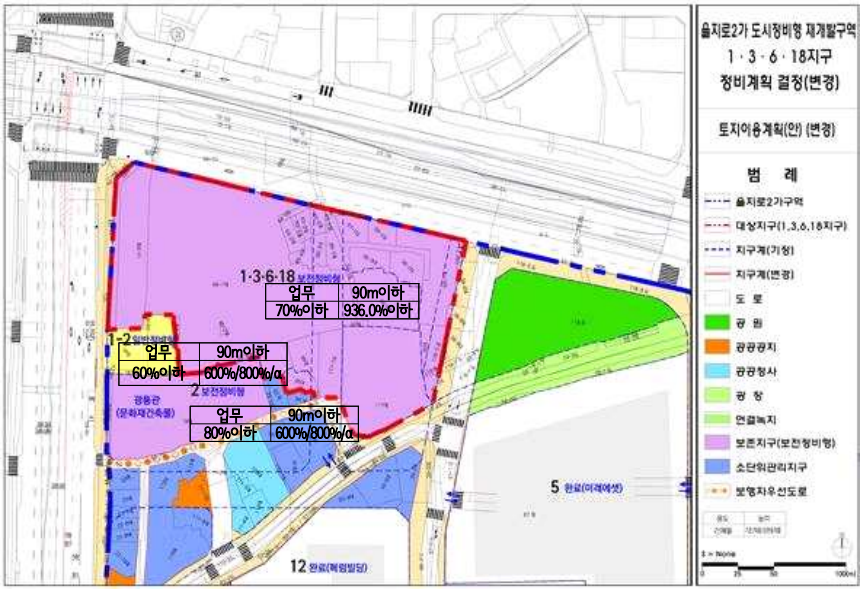

※ 동 정비계획(안)은 미확정된 계획으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다. 기 타

1) 공람기간 : 2019.10.23. ~ 2019.11.25. (33일간)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6층 (☎02-3396-5775)

3)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78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사용하는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폐기 및 등록 사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3. 폐기공인
 - 서울특별시 중구 지출원

2. 등록공인
 가. 규 격 : 2cm × 2cm
 나. 내 역
  - 서울특별시 중구 지출원
 다. 사용일자 : 2019. 10.
 라. 사용용도 : 예산 집행 및 물품출납 시 사용

[별지 제2호서식]

표 면

직인폐기신고서

회 계 명 : 일 반 회 계 (폐기당시인영)

관 서 명 :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직 명 :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지 출 원 인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2019년 9월 일까지

규격 : 세로 5cm 가로 16cm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당시인영"란에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이 면

(폐기사유)
훼손

표기와 위의 사항을 인증함

2019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별지 제1호서식]

표 면

직인등록조서

회 계 명 : 일 반 회 계 (인영)

관 서 명 :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직 명 :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지 출 원 인

사용개시일 2019년 10월 일

규격 : 세로 5cm 가로 16cm

이 면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2019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783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9324호, 2019. 6. 5.시행)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자활 및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대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안 제25조, 제28조)

3. 의견제출

❍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서울 중구청), 문의전화 : 3396-5012, FAX: 3396-8670, 전자우편 : gigusarang@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28조의 제목 “(대부료의 감면)”을 “(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에 제12호 및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 11. (생 략) <신 설>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11. (현행과 같음) 12.「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28조(대부료의 감면) ① ~ ④ (생 략) <신 설>	**제28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9-784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개별통지가 불가한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보상계획에 관한 사항

1. 사업개요
   1) 사업명 :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사업
   2) 사업시행위치 : 중구 충정로1가 75-10 ~ 정동 27-3
   3) 사업규모 : 보행로 신설 및 정비(폭원 2~3m, 길이 138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
2.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부터 2019. 12. 31.까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편입대상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7-44	학교용지	64.1	서울시(교육감)	창덕여중 북측 일부
2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7-45	학교용지	31.2	서울시(교육감)	창덕여중 서측 일부

5. 보상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 ~ 협의 완료시까지
6. 보상방법 및 절차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평가를 의뢰.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진행 → 보상금 지급

7. 보상금 산정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1) 시·도지사 :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2) 토지소유자 : 1개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공고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중구청 가로환경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달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열람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2019. 10. 24. ~ 2019. 11. 07.(15일간)

2.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장소 : 중구청 가로환경과(☎02-3396-6022)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792호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 · 공고

1. 건설부고시 제317호(1983.9.30.)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34호(1984.4.27.)로 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3호(2009.5.7.)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된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 · 공고합니다.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2019.10.23.~2019.11.27.)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변경)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명동구역 제2지구	중구 을지로2가 163-3번지 일대	2,782.5	증)915.3	3,697.8	•기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3호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변경	중구 을지로2가 163-3번지 일대	· 면적변경 - 2,782.5㎡ → 3,697.8㎡	•정비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면적 변경	-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 칭	면적(㎡)			비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782.5	증) 915.3	3,697.8	100.0	
정비기반 시설	소계	-	증) 915.3	915.3	24.7	
	도로	-	증) 300.7	300.7	8.1	
	공원	-	증) 614.6	614.6	16.6	
획지	소계	2,782.5	-	2,782.5	75.3	
	획지	2,782.5	-	2,782.5	75.3	

나.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명 칭	면적(㎡)			비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782.5	증) 915.3	3,697.8	100.0	
상업 지역	소계	2,782.5	증) 915.3	3,697.8	100.0	
	중심상업지역	2,782.5	증) 915.3	3,697.8	100.0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	10	집산도로	92	을지로2가 179-3	을지로2가 168-22	일반도로	-	'84.4.27	• 2지구 부담면적 : 24.1㎡
기정	소로	1	2	10	집산도로	125	을지로2가 168-21	저동 67-4	일반도로	-	'84.4.27	
기정	소로	1	3	10~16	집산도로	101	을지로2가 168-9	저동 103-9	일반도로	-	'84.4.27	• 2지구 부담면적 : 276.6㎡

※ 연장의( )는 구역 내 사항임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 지하공공보도시설) 조서

결정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입체적 결정규모				비 고
				구분	높이(m)	면적(㎡) 지하공공보도시설	면적(㎡) 지하층 연결로	
신설	도로	지하공공보도시설	을지로2가 163-3 일대	지상1층	27.4 (해발고도)	-	123.43	• 지하공공보도시설 (A) - 면적 : 70.70㎡(평면투영면적) • 지하층 연결로 (B) - 면적 : 429.05㎡(평면투영면적) • 전체면적 : 499.75㎡(A+B)
				지하1층	27.4~21.4 (해발고도)	-	203.32	
				지하2층	21.4~18.9 (해발고도)	70.70	102.30	

2)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기정	공원	문화공원	저동 90-10 일대	2,117.0	-	2,117.0	서고2009-183호 ('09.05.07)	• 2지구 부담면적 : 614.6㎡

(2) 녹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녹지	연결녹지	을지로2가 192-2 일대	306.0	-	306.0.0	'84.4.27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 계획

구역명	시행면적(㎡)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기존공공용지(무상양도)(㎡)	부담률(%)
명동구역 제2지구	3,697.8	2,782.5	1,059.5㎡ = 767.5㎡(도로,공원) + 47.3㎡(지하보도) + 96.9㎡(현금납부) + 147.8㎡(공원내 국공유지)	201.9㎡ = 54.1㎡(대지내) + 147.8㎡(공원내)	○기준부담률 : 24.53% ○부담률산식 = (1,059.57㎡ - 201.9㎡) / (3,697.8㎡ - 201.9㎡) = 24.53%

주) 대지내 기존공공용지면적(54.1㎡)은 관리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처리함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확보) 계획

(1)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구역명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명동구역 제2지구	을지로2가	168-16	도로	-	증) 4.0	4.0	소로1-1
		168-20	도로	-	증) 18.8	18.8	소로1-1
		168-25	도로	-	증) 0.3	0.3	소로1-1
		192-12	도로	-	증) 1.0	1.0	소로1-1
	저동1가	43-5	공원	-	증) 42.9	42.9	
		79-8	공원	-	증) 3.7	3.7	
		79-5	도로, 공원	-	증) 48.6	48.6	소로1-3
		79-9	공원	-	증) 3.6	3.6	
		90-2	공원	-	증) 79.0	79.0	
		90-7	공원	-	증) 25.1	25.1	
		90-11	공원	-	증) 15.9	15.9	
		91-2	공원	-	증) 141.8	141.8	
		91-3	공원	-	증) 11.1	11.1	
		96-2	도로	-	증) 52.9	52.9	소로1-3
		101-2	공원	-	증) 0.3	0.3	
		102	도로, 공원	-	증) 48.6	48.6	소로1-3
		102-1	공원	-	증) 7.9	7.9	
		103-1	공원	-	증) 30.7	30.7	
		103-2	도로	-	증) 35.0	35.0	소로1-3
		103-3	공원	-	증) 32.1	32.1	
		103-4	공원	-	증) 4.6	4.6	
		103-5	도로	-	증) 4.6	4.6	소로1-3
		103-6	도로, 공원	-	증) 39.0	39.0	소로1-3
		103-7	도로, 공원	-	증) 38.3	38.3	소로1-3
		103-8	도로, 공원	-	증) 23.8	23.8	소로1-3
		103-9	도로	-	증) 49.6	49.6	소로1-3
		103-11	도로	-	증) 4.3	4.3	소로1-3
합계				-	증) 767.5	767.5	

(2)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면적(사업시행자에 무상양도)

구역명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정	증 감	변 경	
명동구역 제2지구	을지로2가	148-133	현황도로	-	증) 25.8	25.8	서울시
		173-12		-	증) 28.3	28.3	중구
	저동1가	39-3		-	증) 116.6	116.6	서울시
		103-12		-	증) 31.2	31.2	중구
합계				-	증) 201.9	201.9	

마.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 칭	면 적 (㎡)	명칭	면 적 (㎡)						
기정	명동구역 제2지구	2,782.5	획지	2,782.5	을지로2가 163-3 일대	-	-	-	-	-
변경	명동구역 제2지구	3,697.8	획지	2,782.5	을지로2가 163-3 일대	업무	60이하 (저층부75이하)	1,120이하	90이하 (지상20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해당사항 없음

심의 완화 사항

건폐율

○ 지역 특성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 저층부(5층이하, 20m이하) 75% 적용
- 고층부(6층이상, 20m이상) 60% 적용

용적률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완화량 : 200%

목적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인센티브	인센티브량
친환경 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1등급(최우수)	기준등급 준수 시 100%	202.67% ⇒ 200% 적용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240 (kWh/㎡·y)미만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11%이상(비주거)		
역사보전 (의무)	역사흔적남기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시설물포함) 및 지역유래 등 스토리텔링을 위한 전시공간 유치	12.67%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1층 바닥면적의 2/3이상 설치시	30%	
	공공보행통로 등 (지하보행통로 포함)	을지로 지하상가 연계 지하공공보도 설치	30%	
안전 방재	방재 관련시설	옥상녹화, 투수성포장,우수저류조, 침투형 트렌치 시설 설치	30%	

③ 상한용적률 완화량 : 320%

공공시설	산식 = 1.3α x (기준용적률+공공기여시설 인센티브) [α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3 x [(1,059.5㎡-201.9㎡)/2,782.5㎡)] x (600%+200%) = 320.54%

※ ①(600%) + ②(200%) + ③(320%) = 1,120%이하 적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북측(을지로) : 건축한계선 5m

○ 남측(소로1-2) : 건축한계선 2m

바. 정비계획 변경(안)도

〈정비계획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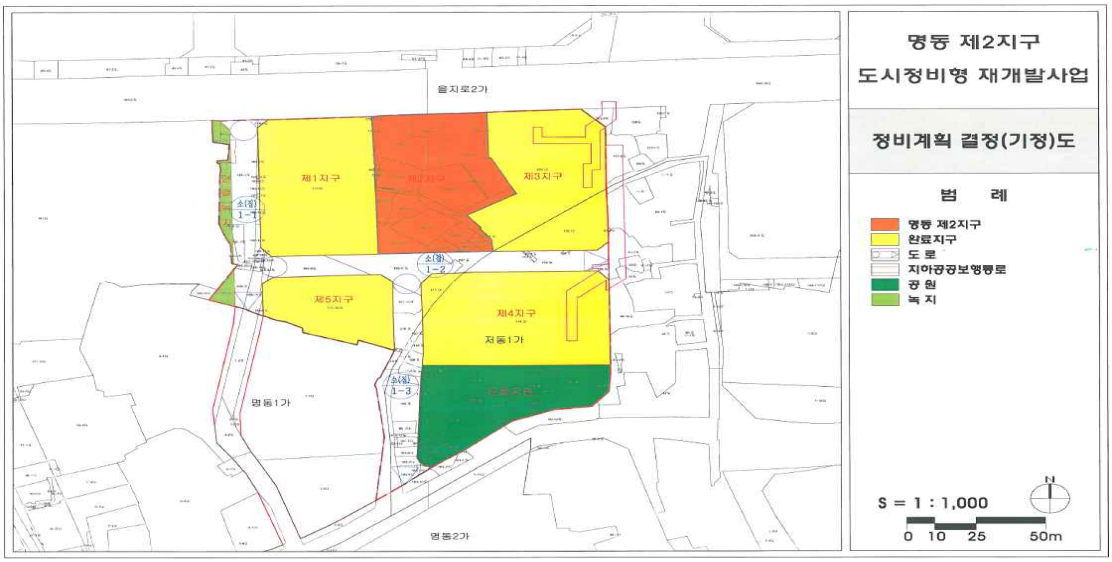

〈정비계획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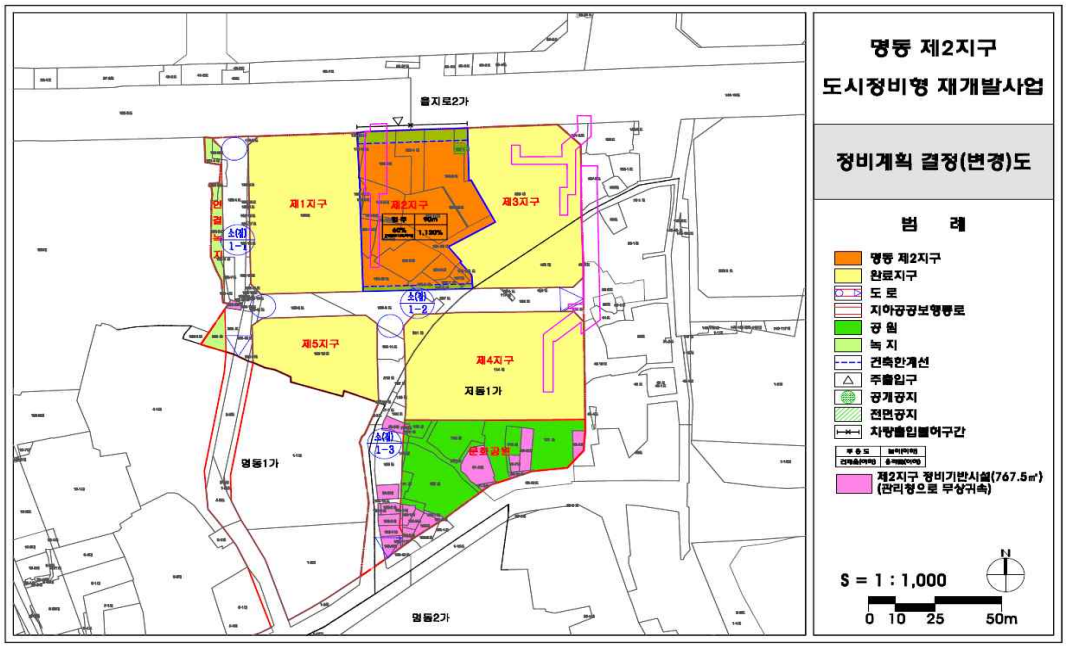

사. 기 타

1) 공람기간 : 2019.10.23. ~ 2019.11.27.(35일간)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72)

3)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801호

전통시장 인정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통시장 인정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고기간 : 2019. 10. 22. ~ 2019. 10. 31.
2. 공고내용 : 전통시장 인정

인정번호	시장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규모(㎡, 개)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점포수
제2019-2호	TEAM204	김정범	서울 중구 신당동 204-48 (마장로 30)	1,042㎡	5,880.12㎡	2,718.82㎡	188개